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09
----------	-------

발의연월일 : 2025. 12. 16.
발의자 : 김소희 · 유영하 · 성일종
우재준 · 김미애 · 김승수
서천호 · 김기웅 · 박형수
추경호 · 김재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안 제40조 제1항

제1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180일”을 “12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험 단위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 -----. - ----- ----- ----- -----.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u>180일</u> 이상일 것	1. ----- ----- ----- ----- ----- <u>12개월</u> -----
2. ~ 6. (생 략) ②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